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의 설치·운영 의무화 등 >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1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안 제43조의2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27.

다. 회 부 일 : 2025.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안 제43조의2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재 「방송법」(이하 “법”) 제43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3조의2를 신설하여 KBS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수행 등을 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도록 함.
- 안 제54조는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을 위하여 보유자산의 활용, 국고 보조금, 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第43條(設置等) ① ~ ③ (생략) ④ 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 있다. ⑤ ~ ⑧ (생략) <u><신 설></u>	第43條(設置等)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역할) ① 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현행	개정안
第54條(業務)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생략) <u><신설></u> ② 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u>補助金</u>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第54條(業務)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역방송국 설치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u>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공사는 제1항제1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1. <u>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u> 2. <u>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u> 3. <u>공익적 목적의 기부금 및 후원금</u> 4. <u>방송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수익</u> 5. <u>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프로젝트 및 기금</u> 6. <u>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u> ③ ---제1항제5호 및 제11호-----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할-----.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¹⁾는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정기적 모의 훈련 실시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KBS의 대응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에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 발령 후 53분이 지나서 재난 특보를 시작하는 등 KBS의 재난 방송 편성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²⁾
 - 그러나 비교적 최근인 2025년 3월 경북·경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KTV국민방송, 「재난방송 요청 일원화... 주관방송사 책임강화」, 2019.5.15.

국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였던 당시에, 재난방송주관사인 KBS의 재난 관련 보도 편성시간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³⁾⁴⁾

- 한편, 현행법 제43조제4항⁵⁾은 공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공사는 9개의 지역방송총국 및 9개의 지역방송국 등 18개의 지역방송국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KBS 지역방송국의 설치현황>

구 분		방송총국	지역국	비 고
계	18	9	9	
서울특별시	-	-	-	수도권(본사)
부산광역시	1	1(부산)	-	
대구광역시	1	1(대구)	-	
인천광역시	-	-	-	수도권(본사)
광주광역시	1	1(광주)	-	
대전광역시	1	1(대전)	-	
울산광역시	1	-	1(울산)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	-	-	수도권(본사) ※경인방송센터
강원특별자치도	3	1(춘천)	2(강릉, 원주)	
충청북도	2	1(청주)	1(충주)	
충청남도	-	-	-	
전북특별자치도	1	1(전주)	-	
전라남도	2	-	2(목포, 순천)	
경상북도	2	-	2(안동, 포항)	
경상남도	2	1(창원)	1(진주)	
제주특별자치도	1	1(제주)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3) 민주언론시민연합 성명서, “또 지역차별인가, 재난주관방송사 KBS는 산불 특별재난방송에 최선을 다해라”, 2025.3.26.

4) 지역방송협의회 성명서, “국지화되는 재난, 지역방송이 책임진다!“, 2025.4.11.

5) 제43조(설치등)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등 KBS 지역방송국이 부재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보도의 지연으로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개정안에 따라 모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KBS의 지역방송국이 설치될 경우 지역 간 균형 및 재난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에 대해서는 KBS 경영의 자율성, 재정 소요⁶⁾ 등의 사항뿐 아니라 현재 방송시스템과의 중복성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KBS**는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화는 KBS 경영의 자유와 이사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추가적으로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여 반대하는 입장임. 다만, 재원조달 관련 부분은 목적을 ‘재난방송’으로 한정하지 말고 KBS가 수행하는 다양한 공적 책무로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국 설치·운영의 의무화는 KBS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이사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6) 현재 등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아직 정확한 비용추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있고, KBS가 구축한 전국 방송시스템에 중복·과잉 설치⁷⁾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재원조달 근거를 신설하는 것도 KBS 재정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방송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원조달 근거를 신설해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는 입법 취지와 함께, KBS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수 있고 현재의 방송시스템에 중복·과잉설치가 될 수 있다는 KBS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타 관계부처 및 관련자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기재부는 재난방송을 이유로 하는 지역방송국 신설은 KBS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지역방송국 설치 시 정부가 재정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 재난방송 제공을 위해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임.
-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재난방송 관련 업무는 현행법 제54조(업무)에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포함될 수 있고, 재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56조(재원)에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7) 방송통신위원회는 KBS는 본사(경인센터 포함), 총국(9개), 지역국(9개) 및 방송보조국을 통해 재난정보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국으로 자동 송출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나 충청남도나 KBS 본사(경인센터 포함), 대전총국에서 재난방송을 송출하여 수신 음영지역은 없는 상태라는 의견임.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방송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재난 및 생활정보 전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상호 역할이 구분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JTBC는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지역방송국 설치에 「방송법」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의 개정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법률의 합목적성에 부합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6